

일시 : 2017. 2. 7. (화) 16:30분-18시까지
장소 : 테니스코트 2층 회의실

2016년도

최종(결산)전체이사회 회의록

2017. 2. 7. (화)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

목 차

I. 개·폐회 선언 및 보고사항1

II. 심의·의결사항2

1. 2016년도 사업보고서 및 2017년도 사업계획서(안)과
2016년도 결산서 및 2017년도 예산서(안) 심의의 건 ... 2
2. 인사규정, 감사규정, 여비규정 제정 심의의 건 3
3. 스포츠평정위원회 위원 구성 심의의 건 4
4. 2017년도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마감일정 심의의 건 5
5. 2016년도 재정자립적립금 기본재산 편입 및
2017년도 재정자립적립금 과실금 운영 심의의 건 6,7

III. 기타 토의7

별첨. 참석자 명단

I. 개·폐회 선언 및 보고사항

○ 2017년 2월 7일 (화) 대한테니스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6년도 최종(결산)전체이사회는 16시 30분 임원 26명 중 14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였고, 17시 59분에 이사회를 종료하여 폐회를 선언하였다.

○ 성원된 2016년도 최종(결산)전체이사회에서 전차 초록 보고와 주요 업무 현황 보고로 사무처인사보고, 사무처 가정의 날 시행 보고, 2017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일시 및 장소 보고, 2016 대한테니스협회 체육유공자 및 생활체육 랭킹 시상식 일시 및 장소 보고를 하였고, 2016년도 정기종합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는 2017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최경선 행정감사가 보고하였습니다.

Ⅱ. 심의의결사항

1

2016년도 사업보고서 및 2017년도 사업계획서(안)과 2016년도 결산서 및 2017년도 예산서(안) 심의의 건

가. 의결주문

2016년도 사업보고서, 2017년도 사업계획서(안), 2016년도 결산서, 2017년도 예산서(안)을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함.

나. 제안사유

우리 협회 정관 제4장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및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에 의거 2016년도 사업보고서, 2017년도 사업계획서(안), 2016년도 결산서, 2017년도 예산서(안)를 승인 받고자 함.

* 관련 규정 : - 정관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내 용

※ 유인물 참조

라. 의결사항

참석인원 14명중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 함.

2 인사규정, 감사규정, 여비규정 제정 심의의 건

가. 의결주문

인사 및 감사 업무와 여비지급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코자 제정된 인사규정, 감사규정, 여비규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 함.

나. 제안사유

우리 협회 정관 제4장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에 의거 제정된 인사규정, 감사규정, 여비규정을 승인 받고자 함.

* 관련 규정 : 정관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다. 내 용

※ 유인물 참조

라. 의결사항

참석인원 14명중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 함.

3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 심의의 건

가. 의결주문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 함.

나. 제안사유

우리 협회 정관 제4장 제14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에 의거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승인받고자 함.

* 관련 규정 : 정관 제14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내 용

김영진 (법무법인 우먼 변호사)

이창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익 (서울고등학교 교사)

박일혁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이재홍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송우규 (울산대학교 체육지원국 팀장)

이승훈 (마포고등학교 테니스 코치)

* 기타 이력 사항은 별첨 이력서 참조

라. 의결사항

참석인원 14명중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 함.

가. 의결주문

2017년도 선수등록 마감일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 함.

나. 제안사유

KTA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 제11조(등록 시기)에 의거 2017년도 선수등록 마감일정을 승인받고자 함.

* 관련 규정 : KTA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 제11조(등록 시기)

- ① 등록기간은 협회에서 결정하되 매년 5월 31일 이전에 한하며, 추가 등록과 신인선수 및 신설팀, 체육동호인은 예외로 한다.
- ② 추가등록은 협회에서 정한 기한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추가등록과 신인선수 및 신설팀의 등록시기와 회수는 협회가 결정한다.
- ③ 선수등록은 등록 마감일까지 선수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선수까지 유효하다.

다. 내 용

2016년도 지도자,선수 등록기간	2017년도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기간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팀 : 2016. 3. 31 ● 신설팀 : 2016. 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팀 : 2017. 3. 31 ● 신설팀 : 2017. 5. 31.

라. 의결사항

참석인원 14명중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 함.

2016년도 재정자립적립금 기본재산 편입 및 2017년도 재정자립적립금 과실금 운영 심의의 건

가. 의결주문

2016년도 재정자립적립금 기본재산 편입 및 2017년도 재정자립적립금 과실금 운영 심의의 건을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 함.

나. 제안사유

우리 협회 정관 제40조(재산의 구분) ①항 4호에 의거하여 2016년도 재정자립적립금 기본재산 편입 및 2017년도 재정자립적립금 과실금 운영 심의의 건을 승인받고자 함.

* 관련규정 : 우리 협회 정관 제40조 ①항 4호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다. 내 용

* 2016년도 재정자립적립금 기본재산 편입 승인의 건

구 분	2015.12.31 현재 자산 현황	2016.12.31 현재 자산 현황
사단법인 출연금 (문화체육관광부)	1,000,000,000	1,000,000,000
국민체육진흥기금 (대한체육회)	753,116,028	753,116,028
자체자립기금	613,593,464	613,594,464
총 계	2,366,709,492	2,366,709,492

* 2017년도 재정자립적립금 과실금 운영 심의의 건

구 분	2016.12.31 현재 자산 현황	비고
사단법인 출연금 (문화체육관광부)	1,000,000,000	
국민체육진흥기금 (대한체육회)	753,116,028	
자체자립기금	613,593,464	
총 계	2,366,709,492	

※ 상기 기금에서 발생한 과실금을 대회운영비로 편성하여 사용코자 함.

라. 의결사항

참석인원 14명중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 함.

Ⅲ. 기타 토의

○ 제1호 안건중 2016년도 결산보고서 및 2017년도 예산서(안)대하여 2017년도 정기대의원총회로 올리는 것으로 추가하여 의결함.

상기 내용에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자세한 회의 내용은 녹취파일로 보관키로함.

2016년 최종(전체)결산이사 회의록

작성자 전영식 사무처장 (인)